

美國 衣類織物產業의 競爭力 強化政策 考察*

A Study on Policy and Movement to Strengthen the Competitiveness of U.S.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慶熙大學校 家政大學 衣類學科
副教授 黃 春 勉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College of Home Economics Kyung Hee Univ.
Associate Professor; Choon-Sup Hwang

<目 次>

- | | |
|-----------------------|-------------|
| I. 緒論 | IV. 結論 및 提言 |
| II. 政府政策 | 참고문헌 |
| III. 民營 衣類織物產業 自體 補完策 | |

<Abstract>

The U.S. response to increased international competition was examined in the present study in order to have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U.S. textile and clothing market.

The method employed to conduct the study was the analysis of the written materials, interview with professionals, and the survey of the actual situations of the U.S.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1. Official U.S. textile and apparel trade policy has been quite protective since 1950's. The protective trend has been embodied in Japan Cotton Textile Export Control (reciprocal trade agreement signed by the U.S. and Japan in 1957), Short 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 Long Term Cotton Textile Arrangement (1962~1973), and Multi-fiber Arrangement (1974~). Other governmental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the competitiveness of the U.S.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include Long-term Textile and Apparel Products Export-expansion Program, and 807 Trade to take labor cost advantage.

2. Along with the quite protective governmental trade policy, the corporate responses have been made such as new sourcing mixes, investment in technology, specialization in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and recent strategies pursued by retailer's. The apparel

*본 논문은 문교부 해외 파견 연구 지원비에 의해 이루어 졌음.

industry was subject to pressure from imports that increased at moderate levels, and the U.S.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have made extensive efforts to adjust to the increasing competition from abroad. The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have taken steps to increase labor productivity through automation, to speed management to create and introduce new products and new methods, and have lowered indirect overhead costs. Several industry-wide promotion campaigns have attempted to establish a greater public awareness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to develop a preference for apparel produced in the United States.

3. Regarding these response of the U.S. and other situations of world textile and apparel trade market, much of the sense of crisis that pervades Korean textile and apparel industries has to do with the problem of adjusting government and corporate policy. Textile and apparel industry of Korea faces on going pressure to reduce costs, improve quality, increase service, develop new markets, diversify, and differentiate itself from its foreign competitors. The strategies that have been adopted in the past have generally worked in the past, but the time has come to adopt strategies that reflect present conditions. If this is not done, then we stand to lose large segments of these industries, which once lost will not easily be regenerated.

비평들을 분석해 봄은 의의있는 일로 사려된다.

I. 緒論

연구 배경

衣類織物 產業은, 單純勞動力 利用產業이라 衣類織物產業 종사자들을 他產業으로 이동시키기 곤란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많은 노동자가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으며, 노동조합의 압력이 상대적으로 강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특히 선진국의 경우) 產業調整이 어려운 產業中の 하나이다. 이에 선진국들은 國內 衣類織物 產業이 저임금 개도국과의 경쟁을 이겨낼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하에 國內 產業保護를 위하여 1960년대 초부터 衣類織物 類에 대한 수입 규제를 실시하여 왔다. 輸出主導型 成長戰略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역의 缩小가 국가경제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한국은 이에 대한 대응책 모색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보다 효율적인 대응책 수립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교역 상대국 시장의 제반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한국의 주요 수출시장이요 세계의 무역정책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美國이 衣類織物 類의 국제시장 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취한 정책과 배경, 그리고 그 정책들에 대한 美國 內外의

연구 목적

- 1) 美國 衣類織物 製品 貿易政策 및 競争力 強化政
策의 총체적 흐름을 파악한다.
- 2) 競争力 強化政策을 중심으로 한 美國 衣類織物
製品 市場의 성격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도모한다.
- 3) 날로 어려워져 가고 있는 韓國衣類織物製品 수
출여건 극복을 위한 정책 수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연구 문제

上記의 목적 달성을 위해 本稿에서 제기된 연구 문
제는 다음과 같다.

- 1) 美國衣類織物 產業 競争力 強化政策 실시의 배
경은 무엇인가?
- 2) 美國 衣類織物 產業 競争力 強化政策의 유형 및
성격은 어떤 것인가?
- 3) 美國 衣類織物 產業 競争力 強化政策의 효과 및
결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연구 방법

문헌자료 분석이 주된 연구법이었고 면접, 현장관

찰이 보충수단으로 시행되었다. 정부 차원에서 책정·실시된 주요 정책에 대해서는, 시행된 時順으로 문현자료 고찰을 통해 정리 분석하였고, 민간차원에서 실시된 의류직물 산업체 자체 경쟁력 강화활동에 대해서는 문현자료 고찰과 함께 업체현장 관찰, 관련 전문가와의 면접을 통해 고찰하였다.

연구 범위 및 제한점

本稿의 時期의 연구범위는 미국의 衣類織物產業이 수입제품에 의해 타격을 받는다고 판단한 美政府가 무역상대국과 수입량에 관한 협정체결을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이다. 그러나 民營 衣類織物產業 自體 補完策에 대해서는 문현자료의 빈곤에 의해 時順으로 정리 분석하지 못하고 근래에 시행되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고찰하였다.

本稿에서 의미한 「競爭力 強化政策」은 미국이 1950·60년대의 세계경제에서 누리던 위치를 회복하기 위하여 취한 정책이 아니라, 날로 달라져 가고 있는 貿易市場의 상황이나 수요에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처하여 국제경쟁력을 보다 향상시키고자 취해온 정부정책 및 民營 衣類織物業體活動이다.

II. 政府政策

1. 수입규제

1) 美日間 編織物 自律規制協定

1950년대 중반 미국은 서구제국을 비롯한 일본 및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저렴한 수입품에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일본으로부터의 編織物 製品 및 低附加價值의 값싼 여성복과 아동복의 수입이 날로 급증함에 미국은 수입물량 규제를 통하여 美衣類織物 產業 保護를 도모하기 시작했다.¹⁾ 즉 미국과 일본은 1957년 쌍무적 협정(編織物自律規制協定)을 체결하였으며, 그 협정내용은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으로 인해 미국의 시장침해나 시장교란이 야기되거나 우려될 경우에는 미국이 일본 특정 상품에 부였했던 관세양허 혜택을 해지(Surcharges의 형태로) 한다는 것이었다. 결국 일본은 이 협정에 의해 면직물 제품의 대미수출을 5년간 자율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이탈리아 역시 특정제품의 대미수출을 제한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그러나 얼마 안가서 이번에는 일본이 아

닌 다른 국가들이 對美輸出을 증가시킴으로써 이 협정의 협정을 들어내 보였다.²⁾ 1960년에 이르러 對美衣類織物輸出로는 홍콩이 1950년대 중반의 일본위치를 찾이 하였으며 그의 많은 나라들로부터의 수입증가는, 이 수입에 의해 야기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었다. 이는 당시 미국뿐 아니라 EC를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겪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리하여 1959년 11월, GATT(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의 초청 아래 선진국으로의 開途國製品 수입증가 규제를 향한 多者的 접근 장치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었다. 즉 GATT가 원래 생각한 것은 비슷한 경제구조를 지닌 제 국가간의 무역에 대한 것으로서 개발도상국으로부터의 저렴한 상품이 유입되어 시장질서를 무너뜨리는 데 대하여는 따로 유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³⁾ 1960년 11월 19일의 GATT 제 17차 총회에서, 아이젠하워 政府가 일본과 체결한 編織物 自律規制協定(1957년)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던 「시장교란(Market Disruption)」의 개념보다 구체적으로 토의되었다. (그러나 「시장교란」의 개념상의 모호성은 오늘날 까지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또한 「시장교란」을 피하기 위한 위원회가 GATT 산하에 형성되어서 GATT 가입국들의 시장교란 및 손실을 막기 위한 보다 건설적인 방책을 강구하기에 이르렀다.

2) 短期編織物協定

衣類織物製品 輸入의 증가가 계속되자 John F. Kennedy 대통령은 당시 美衣類織物產業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체계적으로 연구분석하고, 수입으로부터의 압력 극복 대책 마련을 담당해줄 새 위원회를 조직하였다. 이 위원회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1961년에 면직물 무역에 관한 최초의 국제협약인 短期編織物協定(STA: Short-Term arrangement Regarding International Trade in Cotton Textiles)을 수립하였다. 이 短期編織物協定에서는 「시장교란」에 해당하는 조건과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밝히고 또 수입국이 그러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방책과 절차에 대해서 표현하였다. 일단 시장교란이 일어나면 수출국은 30일 이내에 수출량을 기본수준으로 낮추어야 하고, 만일 이 기일을 지키지 못하면, 수입국은 수입규제조치를 취할 권한

을 갖게 된다는 내용의 이 협정은 1961년 10월 1일부터 1년간 유효한 多者間協定으로서 면직물의 국제 교역에 관한 장기적인 대책의 강구를 앞두고 그 장기대책이 확립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한다는 목적 하에 시행되어 장기 면제품협정(LTA: Long Term Cotton Textile Arrangement)의 길을 터준 것이었다.⁴⁾

3) 長期綿織物協定

短期綿織物協定에 이어 1962년, 미국이 主唱하고 先進國들의 同調로 締結된 長期綿織物協定은 시장교란 개념을 STA보다 더 크게 반영하여 「긴급 수입제한조치」 개념을 확대 강화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先進國들은 綿製品을 貿易自由化 추세와 일치할 수 없는 특수한 부문으로 인식하여 GATT 1條(無差別·MFN원칙) 및 19조(Safeguards)와 상치하는 선별적인 수량규제가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만든 것이다. 1967년과 1970년 두 번의 연장을 거쳐 1973년까지 유효했던 LTA의 결과, 새로 등장한 少量輸出國들은 상대적으로 많은 쿠터가 주어지고, 급성장하던 大量輸出國의 수출성장률은 감소되었다. 그러나 이 LTA에 의해서도 수입으로 인한 美國側의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못하였는데, 그 주된 원인은 對美輸出國들이 수출제품의 구성성분을 변화시킨 때문이었다. 즉 이 기간동안 開發途上國 특히 아시아의 大量輸出國들은 LAT下의 규제대상이 아닌 인조섬유생산으로의 전향을 시작했고 1960년대 후반부터 人造纖維製品이 綿製品의 代用物로써 각광을 받아, 1970년의 美國 인조섬유직물 수입량이 1960년의 10배가 넘게 되었다. (1960년 : 31 million pounds, 1970년 : 329 million pounds)⁵⁾ 또 한편으로는 纖維製品의 수입도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 의류직물 산업계에 새로운 위협을 가했으므로 美國內에서는 LTA를 改正, 纤維 및 人造纖維製品까지 規制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압력이 고조되었다. 하여마침내는 1971년 가을 美國은 日本과 纤維 및 人造纖維輸出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연이어서 홍콩, 대만, 한국 등과도 同協定을 체결하여 纤維類 주요 輸入國 들로부터의 輸入物量을 조정하기에 이르렀다.

4) 多者間 纤維協定

1970년대 초반 당시 주요 對美輸出國으로 부터의 輸入纖物調整은 가능해졌어도 아직 纤維 및 人造纖

物에 관한 多者間協定이 없었기 때문에 美國法으로는 모든 纤維類輸出國들을 合法的으로 통제할 수가 없었다.⁶⁾ 따라서 美政府는 對美交易國과 협상을 계속하여 1974년 1월부터 1977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多者間纖維協定(MFA: Multi-Fiber Arrangement)을 탄생시켰다. 綿製品뿐만 아니라 人造纖維, 毛織物 제품에 까지 확대하여 수입규제를 가하고 있는 MFA는 세차례의 연장을 거쳐서 지금은 1991년 6월 31일까지 유효한 MFA IV가 발효중이다. GATT의 예외조치로 인정되고 있는 MFA는 GATT 섬유위원회와 섬유감독기구(TSB: Textile Surveillance Body)에 管掌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그目標는 表面上으로는 섬유류교역을 점진적으로 自由化하여 開途國들의 수출기회를 확대하며, 또 先進國들에게는 纤維產業構造調整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開途國의 對先進國 纤維類輸出을 規制하고 開途國의 年平均輸出增加率의 上限線을 設定함으로써 先進國의 國內產業을 保護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다.^{7,8)} 이와같은 목적으로 성립된 MFA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衣類織物類를 대상으로 輸出入國間に 체결된 雙務協定에 따라 輸出國에 의해 쿠터가 운영되며 (Seller's Quota), 前年度輸出實績에 6%를 加算한 量이 當年度의 輸出量이 된다. 그러나 이와같은 輸出이 輸入國市場에 교란을 일으켰거나 그러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 輸入國은 輸入制限措置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이와같은 諸般措置는 TSB, GATT 섬유위원회에 보고되어 심의된다. 그리고 MFA에서는 開途國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우를 해야하며 北歐諸國에 대해서는 강력한 輸入規制措置를 인정하는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

MFA 規制下에 輸入된 제품들에 의한 미국시장 침해나 시장교란의 발생 및 우려에 대해서는 의류직물 수출입에 관한 협약이나 정책의 시행을 담당하는 위원회(CITA; Committee for the Implementation of Textile Agreements)에서 조사분석한다. CITA의 지휘 아래 Department of Commerce's Office of Testiles and Apparel (OTEXA)에서 각국으로 부터의 수입량을 조사하고 주말회의를 열어 미국내 생산량, 수입과 국내생산의 비율, 시장 할당 등을 분석한다. 여기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해서 섬유 및 의

류직물 제조업체의 대표자와 관련 단체, 노동조합 (Clothing and Textiles Workers Union, The International Ladies Garment Workers Union)들이 정규적으로 회합을 갖는다. (그림 1 참조)⁹⁾

그런데 MFA 规定(Annex A)에 따르면 特定品目 의 特定輸出國으로부터의 輸入이 급격하고도 상당한 증가를 보임으로써 誘發된 시장교란을 근거로, 그러한 個別國으로부터의 個別品目에 대해서만 쿠터 규제를 發動하도록 되어 있으나 MFA II 시행을 전후하여 미국과 EC를 중심으로 한 선진국측에서는 이와 같은 시장교란 개념을 일방적으로 수정하여 시장침투율, 國內消費增加率, 個別國으로부터의 輸入의 누적 효과 등 諸要素를 고려한 소위 「누적적 시장교란 개념 (Cumulative Market disruption)」을 적용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홍콩·대만과 같은 주요수출국에 대해서는 MFA 규정을 위배한 엄격한 쿠터 규제가 차별적으로 强化되었으며 뿐만 아니라 群小輸出國 및 新參輸出國들에 대해서도 예방적 의도의 쿠터 규제가 확산되고 있다.¹⁰⁾

MFA는 연장이 될 때마다 그때그때의 상황이나 문제점들을 고려, 수정되었으나 美國內外로부터의 비난의 소리가 높다. 우선 MFA는 자유무역의 원칙을 반했으며, 소비자와 미국경제에 손실을 가져왔다고 지적받고 있다.¹¹⁾ Michael C. Munger는 저렴한 衣類織物製品의 수입규제로 인해 1982년 美消費者들은 \$3.4 billion에 해당하는 손실을 부담했다고 보고했다.¹²⁾ 또한 MFA는 단순히 美衣類織物產業에 미치는 수입의 영향은 감소시켰지만 수입의 추세 자체를 근절시키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¹³⁾ 美衣類織物產業界指導者들은 MFA 실시에도 불구하고 수입량이 극한상황까지 치솟은 이유는, 첫째, MFA가 적극적으로 시행되지 못해온 때문이며, 둘째, 미국 시장의 年成長率이 MFA에서 수출국에게 허용한 年輸出 증가율인 6%에 미치지 못한 까닭에 수입품의 美市場 占有率이 날로 커졌고,¹⁴⁾ 세째, 수출국들로 하여금 수출규제대상품목 대신 다른 품목을 수출하게 하는 등의 MFA 조항 자체가 안고 있는 협점들 때문이라 분석하였다.¹⁵⁾

그러나 MFA의 시행결과로 극동 3개국(대만·홍콩·한국)을 위시한 先發開途國의 수출은 감소되었다.¹⁶⁾ 또한 先進各國은 이 MFA라는 多者間 貿易體

制 유지를 수입규제 실시에 필요한 정보, 入力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¹⁷⁾ 예를 들면 미국과 EC 양국의 경우, EC의 纖維類輸入規制가 강경할 경우 開途國商品이 美國市場으로 침투할 우려가 있겠으나 MFA라는 多者間貿易體制를 통하여 EC의 강경노선을 보다 용이하게 유화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開途國의 경우에는, 協商交涉力이 先進國에 비해 약하므로, 多者間規範 속에서 開途國間의 단합을 통해 협상력을 제고시킬 수 있다는 잇점이 있었다.¹⁸⁾

2. 807 무역

관계조항 807이 美關稅標에 삽입된 때는 1963년이다. 域外에서 봉합되어 나중에 미국으로 再輸入되기 위해 수출되는 부품이나 원자재는 「반드시 더 이상의 조작을 거치지 않고 봉합만 하면 완제품이 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고, 봉합되는 과정에서 외형적 특성이 손실되지 않아야 하며, 봉합에 의한 것 이외에는 가치 상승이 없어야 한다」¹⁹⁾는 조건이 따른다. 이 807 무역은 주로 域外의 저렴한 인건비를 이용하기 위한 것이다. 1983년의 807 수출액이 1978년에 비해 41% 증가 했으며 (1983년 : \$350 million, 1978년 : \$248 million) Mexico가 미국의 주요 807 무역지역이다. 그러나 이 807 무역의 경우 품질관리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域外의 봉재기술이 미국에 비해 대체로 뒤떨어지고, 복잡한 style의 의류인 경우에는 봉재공을 상당히 훈련 시키지 않고서는 생산 할 수 없으며, 域外工場의 감독·기계보수 및 검품을 맡아줄 수 있는 인재의 부족, 그리고 운송에 소요되는 경비와 시간(域外工場의 위치와 운송수단에 따라 어느정도 차이가 나기는 하지만) 때문에 807 무역은 아직 그다지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로 볼 때는 807 무역량이 상대적으로 적은량에 불과하지만, 앞으로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1995년까지는 衣類판매고의 10%를 807 무역제품이 차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²⁰⁾

3. 기타 정부정책

1970年代 후반 美政府는 長期衣類織物製品 輸出擴張計劃에 착수했다. 그러나 급격한 달라가치 상승으로 인해 衣類製品은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長期輸出計劃의 성과를 저조하게 하였다.²¹⁾ 그러나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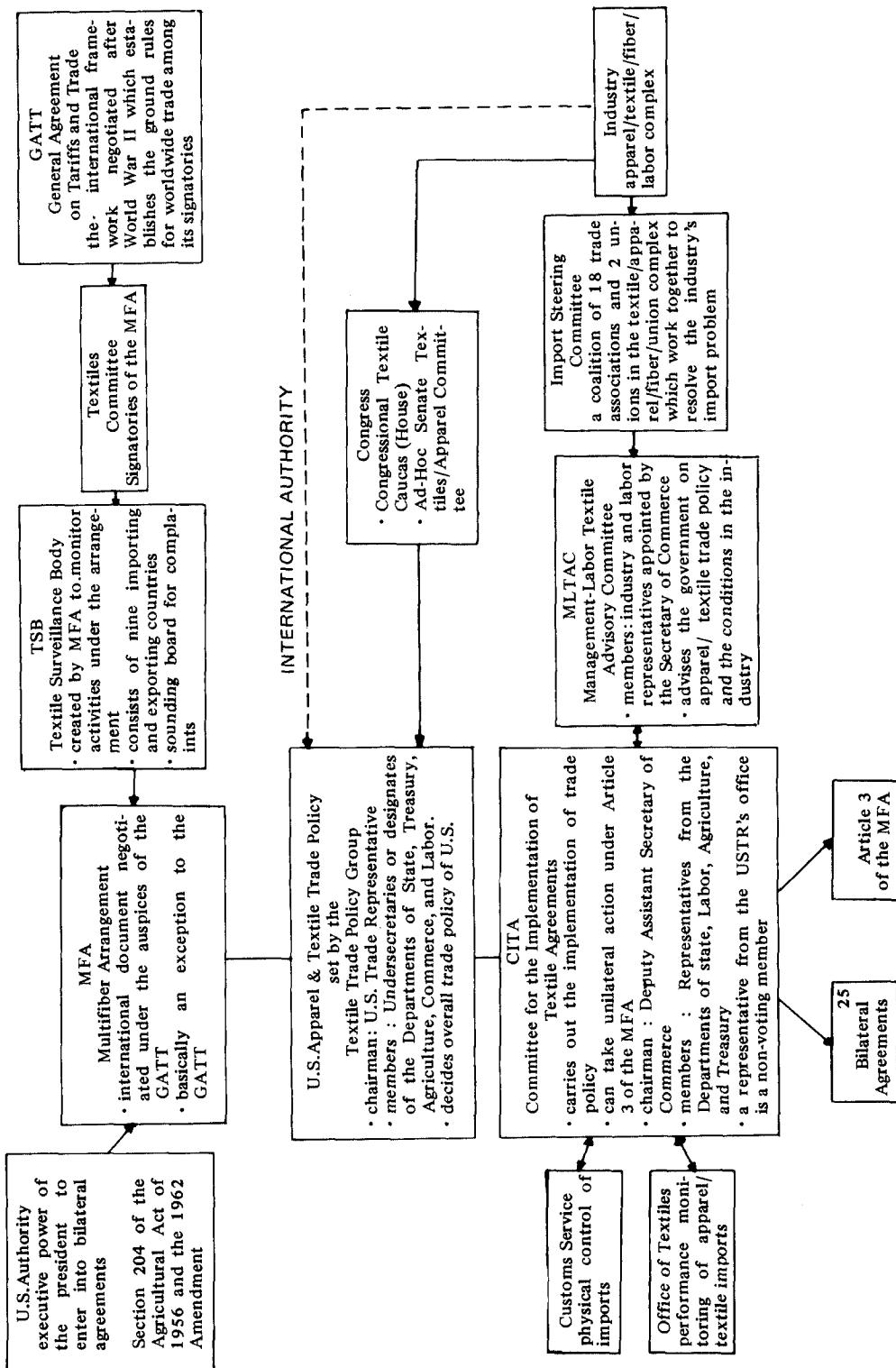


Fig. 1. U.S. Administration of Trade Policy

속적으로 달리가치를 조정하고, 對美輸出國 및 교역 상대국에게 시장개방을 요구함으로써 衣類織物生產業體의 輸出을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특히 市場開放要求는 명분상 貿易自由化를 확대하는 것이므로 保護主義 조치라는 內外의 비난을 피하면서 국제 수지 문제를 해결하고 美國內 業界의 해외시장확보 요구를 수용하는 유용한 방책이기도 하다. 이 市場開放要求와 輸入규제 強化政策을 뒷받침하는 美國側의 논리는 公正貿易과 相互主義에 대한 美國의 일방적인 해석에 근거하고 있다. (이 두가지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 국제적 합의가 없는 상태임). 美國側의 公正貿易論은 「진정한 自由貿易의 실현을 위해서는 상호 공정한 경쟁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타당한 주장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不公正貿易을 지나치게 廣義로 해석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국 무역자의 주원인이 외국의 不公正貿易에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不公正貿易은 美通商法 301條와 1930년 關稅法 337條(知的所有權 침해에 대한 制裁조항)에 다소 모호하게 정의되어 있고 최근에는 市場開放要求에 대한 거부(시장폐쇄 상태의 저속)를 不公正貿易이라고 보는 경향마저 나타나고 있다. 이점에서 公正貿易概念은 相互主義와 밀접히 결부되어 있다. 여기에서의 相互主義는 史上 국제무역과 통상교섭이 시작된 이래 적용되어온 가장 오래된 무역규범으로서의 의미, 즉 한 나라의 무역장벽의 철폐정도와 협상대상국의 市場開放조치의 정도간의 대체적인 균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의 수준 (level of Protection)” 자체를 같은 한다는 의미가 있다.²²⁾ 다시 말하면 미국이 교역대상국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의 시장 접근 및 투자의 기회를 상대국에게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요구는 사실상 그 내막에 있어서는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相互主義에 대한 판단기준이 시장 접근 장애, 즉 무역장벽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수치로 나타나는 貿易收支動向에 있다. 그리고 이 相互主義는 최근 二國間에 쌍무적으로 적용되거나 부문별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 무역의 성과에 대한 二國間 相互主義追求는 모든 對美貿易黑字國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나라를 모두 不公正貿易國으로 분류한다면 美國도 자신이 貿易黑

字를 기록하고 있는 국가에 대하여 不公正하다는 미묘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 또한 이것은 GATT의 無條件附 MFN 원칙에 위배되는 것일 뿐 아니라 開途國 우대원칙에도 반하여, 경제력이 상이한 두 나라간의 무역조차 반드시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公正觀念에도 맞지 않는다.²³⁾

III. 民營 衣類織物產業 自體 補完策

1. 경영 및 생산체제 개선

미국의 무역적자폭이 매우 커지고 경쟁력 약화로 인해 통합·폐쇄되는 의류직물업체가 날로 증가하자, 의류직물업체의 경쟁력을 높히기 위해, 업체들은 그 경영관리제도를 보다 조직화 하며, 목표시장을 더욱 세분화하고 생산제품을 한층 더 특수화·전문화·다양화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 모색에 매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美國內 청부생산제도의 활성화·외국산 소재 사용·외국산 혹은 미국내 생산재료를 이용한 해외 청부생산·임금이 저렴한 외국과의 합작생산 등, 807 무역의 代案을 활용하여 807 무역이 지닌 단점을 해소하면서도 생산원가를 낮추어가고 있다. 그 중 생산과정과 품질의 관리가 수월하고 신용도가 매우 높은 美國內 청부생산제도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어 1987년 현재 미국 총 의류생산제품의 15~20%가 美國內 청부생산제도에 의해 생산되었다.²⁴⁾

2. 시설·설비 개선

근래 美國衣類織物產業體의 量的膨창은 제한되어왔지만 생산의 효율성을 높히기 위한 시설·설비의 초현대화는 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생산가를 낮추고 생산시간을 절약하면서도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高性能 機器開發 및 導入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는데, 특히 衣類業界의 자동시설에 관한 연구는, 業界와 노동자 단체의 후원에 의해 비영리적으로 운영되는 Tailored Clothing Technology Corporation에서 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체 시설 확충 및 초현대화의 많은 부분이 서독, 스위스, 일본의 衣類織物 機器製作社에서 생산한 기계류의 수입에 의해 이루어 졌다. 美衣類織物業界가 外國衣類織物機器製作社의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게하는 이러

한 경향을 보고 美產業界 지도자들은 “그 어떤 나라도, 심지어는 이 기계들을 제작한 나라에서 조차도 미국에서 만큼 이 기계들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표현했다.²⁵⁾ 1960년대 초반 美衣類業界의 자동시설 보유율은 5%에 지나지 않았으나, 1970년대 초반에는 15%에 이르렀고, 전자공학의 발달에 힘입어 현재에는 거의 40%에 가까운 자동시설을 구비하고 있다. 이에따른 의류업체의 생산력은 년 4%씩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²⁶⁾ 특히, 주문·재고관리·선적 및 유통에 관련된 자동시설을 작동하는 데에 컴퓨터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경비도 절약되고 서비스의 속도도 신속해졌다. 예를 들어, 많은 섬유·직물·의류업체가 그들의 생산·유통시설을 소매점의 컴퓨터에 연결시켜 놓은 결과, 매장과 생산 라인이 보다 긴밀하고 빠르며 정확하게 연락을 취할 수 있어 賣主들은 재고수준을 50%까지 줄일 수 있었고, 주문에서 납품까지 30일 이상 걸리던 시간을 약 5일 정도로 단축시켰으며, 매장에서는 가격인하를 해야 할 상품의 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었다.²⁷⁾ “Quick Response”라는 슬로우건 아래 진행되어 온 이러한 첨단과학 기술을 이용한 생산 및 유통시설 구비는 미국 의류직물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상당히 높혀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²⁸⁾

3. 소매업자들에 의한 수입감소 추진 운동

저렴한 가격의 상품을 공급받아 판매함으로써 이익의 폭을 넓히고자, 과거 美衣類織物 소매업자들은 해외로 부터 미국으로 수입된 저렴한 수입상품을 많이 취급해 왔다. 그러나 근래에 와서는 많은 소매업자들이 저렴한 수입상품을 사입·판매하는 대신 美國內에서 저렴한 제품을 직접 생산하여 판매하고자 노력함으로써 美國의 衣類織物產業 保護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즉 소매업자 자신들이 자신의 매장에서 판매할 제품을 직접 디자인하고, 소규모로 청부생산하고, 포장하고, 자신들의 매장으로 운송까지 직접하여 과거에 美衣類生產業體가 하던 기능을 다함으로써, 매장 제품 구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줄임과 동시에 수입의 량을 절감시키고 있다. 관련자와의 면담결과에 의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자신의 매장을 찾아오는 자신들의 고객요구를 보다 잘 반영시킬 수 있음은 물론 매장의 특성을 살리고 매장 이미지를 보

다 생생하게 부각시킬 수 있는 제품구비가 더 수월하며, 이익에 있어서도, 외국산의 저렴한 제품에 의해 취해져 왔던 것에 그다지 뒤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매업자들 간에 이 운동이 크게 환영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입 감소 추진 운동은 “간접적으로 美國衣類織物產業體의 國際競爭力 向上에 상당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신념과 자부심을 가진 소매업자들에 의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수 없이 다양한 각 소매점마다의 특성에 맞추어 신속하게 호흡을 같이해 주는 생산업체가 현재로는 그다지 많지 않다는 문제점이 이 운동전개에 다소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³⁰⁾

그밖에, 수입제품의 범람속도와 힘을 약화시키기 위한 소매업자들의 운동으로는 광고활동을 들 수 있다. 고객들로 하여금 「made in U.S.A.」 상표에 대한 자부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각종 메시지를(Video, film, 사진, 슬라이드, 유인물 등) 준비해 두기도 하고, TV·신문·잡지 등의 광고 매체를 통해 매장광고를 내보내면서도 소비자들에게 「made in U.S.A.」 상품 착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 광고가 고객들의 구매활동에 직접적으로 얼마만큼의 변화를 일으켰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보고는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의식에 미친 이 광고의 영향은 상당히 컸다고 보고되고 있다.³¹⁾

IV. 結論 및 提言

수입품의 美市場 점유율이 날로 커지고 저임금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미국은, 세계의 의류직물제품 시장의 여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美·日間 紡織物 自律規制 協定(1975년), 短期 紡織物 協定(1961년), 長期 紡織物 協定(1962~1973년), 多者間 纖維協定(1974년~현재)과 같은 輸入數量制限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域外의 쌈 임금을 활용하기 위한 807貿易의 관세조치와 아울러 長期 衣類織物製品 輸出擴張計劃, 달리 가치조정, 公正貿易 및 相互主義를 빙자한 市場開放要求로 美國內 衣類織物產業 保護政策을 펴왔다. 수입규제 및 市場開放要求는 強化一路를 걸어 보호무역적 색채가 날로 짙어져온 실정이다. 하여, GATT의, 긴급수입제한조치가 가장 크게 적용되고 있는 분야

가 바로 의류직물분야이며 이는 MFA 협상 무대에 잘 나타나고 있다. 이는 美國衣類織物產業의 경쟁력 저하의 주원인이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저렴한 가격의 제품 및 외국의 不公正貿易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취해진 정책으로서 미국이 산파적 역할을 하여 탄생시킨 GATT를 스스로 약화시키고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국내외의 적잖은 비난이 있어 왔지만 이러한 관세 및 수입수량제한 정책의 결과로 先發開途國의 對美輸出을 감소시키고 美衣類織物產業에 미치는 수입의 영향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의류직물 제품 수입의 증가추세는 여전히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다.

관세라든가 수입수량제한 등의 무역조치 외에 또 다른 한편에서 취해진 美衣類織物產業 競爭力 強化政策의 유형으로는 설비·시설의 초현대화, 생산체제의 합리화·효율화, 유통체제의 재조정 등 산업구조 자체의 조정·보완책을 들 수 있다. 또한 소매업자들이 매장제품을 자체적으로 디자인하고 소규모로 청부생산하여 소비자들의 요구를 보다 신속하고 생생하게 제품마다 반영시키고 컴퓨터 시설을 이용한 "Quick Response" 운동을 펼치는가 하면, 美國內生製品 사용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각종 의사전달매체를 통해 미국민들에게 보내기도 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競爭力 強化 운동이 날로 가속화되어 가고 있음을 감안할 때, 向後 韓國의 對美輸出은 단순한 수입규제나 관세를 피하기 위한 정책모색의 차원을 훨씬 뛰어 넘어야 할 것으로 사려된다. 이미 추진해오고 있는 製品戰略(製品高級化)을 통한 輸出單價提高 및 非敏感品目으로의 輸出商品 多樣化)과 市場開發(中東·아프리카 등 非 korter 地域), 技術向上을 통한 勞動生產性의 提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며, 원화가치 상승의 극복과 섬유산업구조의 선진화를 골자로한 1989년도 한국 상공부의 섬유산업 정책도 잘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과 계획수립에 못지 않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官과 民의 긴밀한 협조와 협력이라고 하겠으며, 지금까지 제시된 정책들을 하나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해 갈 것인가가 더 큰 과제로 제기된다 할 것이다. 한국 의류직물산업체는 對美通商活動의 주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여 신중한 경영적 자세를 취하고, 가능한 분쟁

의 소지를 자율적·원천적으로 해소시키는 노력을 더욱 경주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1. Hunsberger warren, *Japan and United States in World Trade*, New York; Harper and Row, 1964, pp. 120-121.
2. B.Balassa, "Industrial Prospects and Policies," World Bank Staff Working Paper, No. 453, 1981, p. 11.
3. *Business America*, October 13, 1986, p. 9.
4. Brandis R. Buford, *The Making of Textile Trade Policy, 1935 ~ 1981*, Washington D.C.; American Textile Manufactures Institute, 1982, p.15.
5. *Apparel World*, December 27, 1982, p. 22.
6. Buford, *The Making of Textile Trade Policy*, p. 36.
7. Ying-Pik Choi, Hwa Soo Chung and Nicolas Marian, *The Multi-fibre Arrangement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Frances Pinter Limited, 1985, pp. 11-23.
8. 이문봉, 「세계 섬유무역 질서 변화와 우리의 대응」, 서울 : 산업연구원, 1986, p. 25.
9. Fariborz Ghacar, *U.S. Industrial Competitiveness*, Massachusetts; D.C. Heath and Company, 1987, pp. 80-81.
10. 박준성, 「세계 섬유 산업과 선진국 수입규제」, 서울 : 국제경제연구원, 1981, p.6.
11. A.W. Clausen, "International Trade and Global Economic Growth; The Critical Relationship,"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Detroit Economic Club, Detroit, May 23, 1984.
12. Ghacar, *U.S. Industrial Competitiveness*, pp. 80-81.
13. Alvin D. Delman, "Textile Trends in the United States," Paper presented at the Twenty-sixth International Man-Made Fibres Congress, May 20-22, 1987, in Dornbirn, Austria.
14. Vinecent Cable and Besty Baker, *World Textile Trade and Production Trends*, London;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83, p. 136.
15. Eugene C. Gwaltney, *The Making of Textile Trade Policy*, Washington D.C.; American Textile Manufactures Institute Inc., 1982, pp. 56-58.
16. 이문봉, 전계서, p. 46.
17. *International Organization*, New York; Cornel

- University, 1983, pp. 642-643.
18. Ying-Pik Choi, *The Multi-Fibre Arrangement in Theory and Practice*, London; Frances Printer, 1985, pp. 79-80.
19. Tariff Schedules of the United States Annotated, Item 807.00.
20. Apparel Political Education Committee of the American Apparel Manufactures Association, "Apparel Trade Under 807,"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officials and non-government experts, Washington D.C., October 14-16, 1986.
21. J.S. Arpan, J. Torre, and B. Toyne, *The U.S. Apparel Industry; International Challenge, Domestic Response*, Atlanta; College of Business and Administration, 1984, pp. 52-53.
22. William R. Cline, "Reciprocity; A New Approach to World Trade Policy,"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International Economics Research, Washington D.C., September 1982.
23. 「세계경제동향」, 서울 : 산업연구원, 1988, p. 113.
24. Fariborz Ghadar, *U.S. Industrial Competitive-ness*, Massachusetts; D.C. Heath and Company, 1987, p. 73.
25. Ibid. p. 74.
26. *Women's Wear Daily*, February 12, 1987, p. 3.
27. *Textiles Industries*, American Textile Manufacturers Institute Inc., November, 1983, p. 8.
28. "U.S. Textile Import Policy Challenged," *Business standard*, July 25, 1987, p. 4.
29. Alma Burge, Babara Scrugs, and Frederick Laugrehr, (personal interview, April 4, 1988).
30. *Textile Chemist and Colorist*, Vol. 19, No. 2, 1987, p. 13.
31. Philip Otterness, "The ABCs of American Trade Laws on Foreign Dumping and Subsidies," *Business America*, December 8, 1986, p.8.